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4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강준현 · 최기상  
정성호 · 황명선 · 진성준  
임호선 · 신영대 · 김영환  
임광현 · 정태호 · 위성곤  
김태년 · 맹성규 · 정준호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, 학원, 예능학원,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.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·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

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,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 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).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300만원”을 “4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능학원(음악, 미술 또는 무용)에 지급한 교육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

